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2019년 5월 조직개편을 반영해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부서장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6조의2)

- “여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직원 정년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2019년 5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 및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의2제3항은 당연직 위원 중 “여성정책관” 을 “여성가족정책관”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5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여성가족정책관) ①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10.>

- 안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1항, 제14조, 제2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임.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회에 한정하여 -- ■ -- 잔임 기간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두 차례만 -- ■ -- 남은 임기로 --
제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자 -- ■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람 --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모든 사항 --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시행에 필요한 --

- 안 제8조제3항은 팀장이하 직원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상의 정년 기준을 준용한다” 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